

# 포 향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737호 2009. 7. 14(화)

선	기 관 의 장
람	

## 포 향 시

- 시장지시사항 ..... 2
- 부시장지시사항 ..... 6
- ◀ 입법예고 ▶
-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제2009-819호) ..... 7
- ◀ 공 고 ▶
-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폐차)공고제 (2009-794호) ..... 20
-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폐차)공고(제2009-797호) ..... 25
-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폐차)공고(제2009-801호) ..... 27

회									
람									



관리 번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p>훈 시 (7. 13)</p>	<p>○ 자매도시 교류활성화 - 대구 수성구, 경기도 수원 등 자매도시들의 자매 단체간 상호초청 방문 등을 통한 실질적인 교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p> <p>○ 불빛축제 홍보강화 - 대구, 부산, 울산지역에 불빛축제 홍보를 적극 실시하 기 바라며, 특히 대구지역에 홍보매체(신문, 방송 등) 활용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기 바람.</p> <p>○ 영일만항 개항홍보 및 물동량 확보 - 영일만항 개항 홍보를 철저히 하고, 경산컨테이 너 화주 간담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물동량 확 보에 차질 없도록 추진바람.</p> <p>○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간부공무원 체험 -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간부공무원들이 동참 체험 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 직접 참여를 통한 올바른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하여 어려움을 조기극복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p>	<p>전 부 서 (자치행정과)</p> <p>전 부 서 (문화관광과)</p> <p>항만정책팀 (전 부 서)</p> <p>희 망 근 로 프로젝트사업 추진TF팀 (전 부 서)</p>

관리 번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훈 시 (7.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기강 확립 제도개선 추진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철저히 이행 하여 비리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바람.</li> </ul> </li> </ul>	전 부 서 (감사담당관실)
'09-0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부해수욕장” 명칭변경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항의 중심부에 위치한 해돋이 고장 영일만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북부해수욕장 명칭변경을 검토 하기 바람,</li> <li>- 부산에 해운대, 강릉에 경포대와 같이 전국적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명칭을 찾아보기 바람.</li> </ul> </li> </ul>	해양수산과
'09-082 (추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쌀 팔아주기 추진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쌀 팔아주는 사람들을 모아 홍보하는 단순한 행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쌀을 먹어야겠다는 시민들의 의식화가 중요함</li> <li>- 기업체와 지역사회의 책임있는 인사들의 동참과 함께 현실을 실감하여 전시민이 공감하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기 바람.</li> </ul> </li> </ul>	농축수산물 유통T/F팀

관리 번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09-0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굴착지 전수보고 및 공기단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굴착 공사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음, 도로굴착 사업장의 공기 등을 전수조사하여 보고 하기바라며,</li> <li>- 토, 일요일 등 공휴일에도 공사를 실시하여 공기를 단축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람.</li> </ul> </li> </ul>	건설환경사업소 (시 설 과)
'09-0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용차량 경차로 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항시 로고를 차량에 부착 운영하여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정책을 솔선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람.</li> </ul> </li> </ul>	재정관리과
'09-0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검토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동사무소 등 도심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하기 바람.</li> </ul> </li> </ul>	남, 북보건소 (보건행정과)

〈부시장 지시사항〉

관리 번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부시장 지 시 (7.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서객 수송대책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절기 지역을 찾는 피서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철도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통편의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기 바람.</li> </ul> </li>   <li>○ 불빛축제 기간중 도로굴착 공사장 현황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최대 행사인 국제불빛축제를 앞두고 있음</li> <li>- 행사 기간중 각종 도로굴착 공사장 현황을 보고해 주기 바람,</li> <li>- 조속한 공사추진으로 공기단축과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li> </ul> </li>   <li>○ 주민과의 약속 미이행 사항 파악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동 순시를 포함하여 시장께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약속한 사항중 예산반영을 하지 못한 사업,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사업 등 전부 파악하여 제출 해 주기바람.</li> </ul> </li> </ul>	<p>교통행정과</p> <p>건설환경사업소 (시 설 과)</p> <p>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p>

**입법예고**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포항시장 박



2009. 7. 14.

포항시 공고 제2009- 819호

##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 1970년대 조국 근대화의 원동력이 된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관광자원화 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며,
-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올바른 새마을운동 정신을 심어주고, 새마을운동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고자 함

### 2. 주요내용

-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개관 및 휴관일을 규정함(안 제5조)
- 이용시설의 범위 및 용도를 규정함(안 제12조)
- 위탁운영 규정을 두어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0조)
- 기념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둠 (안 제27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8.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새마을봉사과,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번지, 전화 270-2454, FAX 270-2460, E-mail : capital@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70년대 조국 근대화의 원동력이 된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올바른 새마을운동 정신을 심어주고, 새마을운동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새마을운동 세계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 포항시 새마을 동발상지 기념관을 건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장소)**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이하 “기념관” 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 357-1 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 기념관에는 전시실, 영상홍보실, 기념품판매점, 사무실 및 기타 부대시설을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기념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념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 업무
- 2. 소장품의 보관·진열·수리·모사 및 복원
- 3. 기념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4. 기타 기념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항
- 5. 기념관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제2장 운영**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 1. 1월1일, 설날 및 추석연휴
  - 2. 매주 월요일
  - 3. 전시관의 개·보수기간
  - 4.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 ② 시장은 지방시찰단 또는 관공서·학교·기타 단체로부터 미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6조(관람시간)**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매일 09 : 00~18 : 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기념관의 전시시설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 1. 전염성 질환자 및 정신 질환자
- 2. 음주 등으로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 3. 기타 공공의 질서를 해 할 우려가 있는 자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음주·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 2. 허가 없이 전시품을 복제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유품이용 및 대여)** 학술조사 및 연구의 목적으로 학교 등 공익단체가 이용 및 대여를 요청할 경우에는 시장은 기념관 운영 및 소장유품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유품에 대한 이용 및 대여를 허가 할 수 있다.

**제11조(기념품의 제작·판매)** 시장은 기념관 홍보와 관람객의 방문 기념을 위한 기념품을 제작·판매 할 수 있다.

### 제3장 이용

**제12조(이용시설의 범위 및 용도)** 시장은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에 기념관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1. 새마을운동 발전과 고취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교육, 세미나 등 학술활동
- 2. 정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새마을운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제13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기념관 시설을 이용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이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이용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이용기간을 조정·변경하거

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이용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시장이 기념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등을 고려하여 이용 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④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 목적에 행사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이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허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이용에 따른 시설 훼손의 경우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 2.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의 취소 사실이 있는 자
- 3. 기타 시장이 기념관의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이용허가의 변경 등)** ① 시장은 기념관의 운영,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용된 시설의 이용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 1. 이용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 2. 제17조제1항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때
-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념관의 시설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

**제16조(이용료)** 기념관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제17조(사용자의 설비)** ① 기념관의 기본 설비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동식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2일 이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임의처분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망실 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제4장 위탁운영

**제2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념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기념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위탁운영비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관의 위탁·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기념관의 운영에 사용 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가 기념관 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1. 시설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 하였을 때
- 2. 제20조제3항의 약정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4조(회계관리)**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회계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념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연1회 이상 수탁자로부터 시설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운영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의거 조사 또는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장 운영위원회

**제27조(목적 및 명칭)** ① 기념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기념관운영주관과장이 되고, 위촉직은 시의회의원,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학계 및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29조(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임기 및 위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제31조(임무)** 위원회는 기념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념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기념관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장 보칙

제32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참석 또는 업무 수행 시에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준용) 기념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13조제1항 관련)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사용(변경)허가신청서

사 용 시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시설 :</li> <li>◆ 기타시설 :</li> </ul>
사 용 기 간	사용기간 :   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회)
사 용 목 적 (주요행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 사 명 :</li> <li>◆ 행 사 일 시 :</li> <li>◆ 참석예정인원 :</li> <li>◆ 행 사 내 용 :</li> </ul>
특별한 설비를 요 하 는 사항	
비 고	첨부 1. 행사 계획서 2. 행사후 복구계획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념관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포 항 시 장 귀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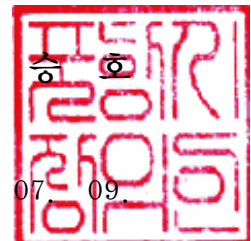
공 고

포항시 공고 제 2009 - 794호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폐차)공고

우리시 관내 노상 등에 무단 방치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폐차코자 하오니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기간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은 강제 폐차함은 물론 차량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같은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 (150만원이하의 범칙금)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09. 07. 09.

1. 공 고 기 간 : 2009. 07. 09. ~ 2009. 07. 15. (7일간)
2. 폐 차 장 소 : 신진폐차장, 포항종합폐차장, 동해지구종합폐차장,  
                  홍해종합폐차장, 태평양종합폐차장(주), 대원종합폐차장
3. 폐차 예정일 : 공고기간 종료 이후
4. 문 의 처 : 포항시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담당자 ☎(054)270-3643
5.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6. 강제처리대상차량 : 붙임 내역참조

공고처리 내역

◆ 총건수 : 15 ◆ 공고기간 : 2009-07-09에서 2009-07-15까지

관리번호	자동차번호 성 명	차 명 주민번호	주 소	방치장소		이해관계
				방치장소	보관장소	
2009-96	02부8578 윤진수	움티마 570125-*****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52번지 32호	포항시 북구 죽도2동 340- 13 향도중학교 뒤 도로상에		대구서부경찰서경고 광주광역시청교통 고양시일산서 구청세무·환위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광주광역시 남구청교통 포항시남구청건고
2009-97	전북4마1998 박현철	쏘나타투2.0골드 760127-*****	전라북도 진주시 완산구 중화산 동2가 232번지 새한그린파크아파 트 1804호	포항시 북구 죽도2동 709-3 쌍마식당앞 도로상에		LG캐피탈(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9번지단 지 전주시덕진구청도로 완주군청재정·건고 삼성카드 (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87번지2003카단6863 전주시완산구청도로·세무 울산광역시중구청교통·완주 경찰서경고 전주완산경찰서교통 포항시남구청건고
2009-98	경북1부1743 박용진	세피아 68120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333번지116호 18/7 영보빌라 가동 303호	포항시 남구 장흥동 140-8 동해지구종합폐차장내에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시청교통 포항시북구 청세무·건고 포항남부경찰서교통 국민건강보험공단포 항남부지사차검 포항시남구청세무
2009-99	대구2대4968 김송남	프라이드오토 490306-*****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616번지 10/3 월성주공아파트 509동 1307 호	포항시 남구 장흥동 140-8 동해지구종합폐차장내에		대구광역시동구청지교 부산광역시청교통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세무·건고·환경·징수 대구광역시남구청지교 대구달서경찰서교통 대구캐피탈(주) 대전광역시 대덕 구 중촌동292번지3호2003카단4004 삼성카드(주) 서울 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87번지2003카단17456 80카드 (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7번지2003카단 37238
2009-100	경북28나7154 김병호	엘란트라 66101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석 리 18번지 11호 상양전원타운 101-406	포항시 남구 장흥동 140-8 동해지구종합폐차장내에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시남구청세무

2009-101	경북29라2748 이창호	공코드LPG 381010-*****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남산리 233번지 10/2	포항시 남구 장흥동 140-8 동해지구종합폐차장내에	영덕군정재우, 민원 영덕경찰서안교
2009-102	대구27거4549 오정근	르망 630115-*****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97번지 1호	포항시 남구 장흥동 140-8 동해지구종합폐차장내에	대구광역시동구청지교, 세우, 정수 대구동구의료보행 조합세우 포항시청교행
2009-103	대구7모8567 오종만	포터슈퍼캠 640527-*****	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 801번지 2호 3/3	포항시 남구 장흥동 140-8 동해지구종합폐차장내에	현대차서비스(주)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4가113- 25단지 대구광역시수성구청지교, 신환, 세우 대한보증 보험(주) 서울특별시 중로구 연지동 136-7498카단 70245 대구광역시청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청교통 대 구동부경찰서경고 대구광역시동구청환경, 세우, 교통 국 단건강모험공단대구동부지사자장
2009-105	61로7812 김원년	EF쏘나타LPG 690808-*****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862번지 302호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583-8번지 우리사랑어린이 집 앞 도로상에	대구달서경찰서경고 포항시북구청건교 대구광역시달 서구청환경, 정수 부산광역시금정구청교통
2009-106	05내9794 김충식	크레도스 580329-*****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310번 지 30/4 202호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죽장중고등학교 옆 주차장 내에	대전북부경찰서경고 대전서부경찰서경고 대전광역시 서구청교통, 환경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2009-107	경북27라1419 안재현	아반떼오도메틱 80013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15 번지 3호 4/3 조양타운 103호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975-5 레미인빌 주차장내에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시남구청세우 포항시 청환위

2009-108	경북27미8496 김동연	크레도스 57110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95-3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송원정 모델 주차장내에	포항시청교행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시북구청세무 포항시남구청세무 국민건강보험공단포항남부지사지정 서울특별시광진구청교지
2009-114	경북29나16136 양준석	쏘나타투2.0 60013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3번지영포아파트512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320 대원종합폐차장내에	서울특별시강남구청교지 순천시청교행 포항북부경찰서교행 김해시청교행 포항시북구청세무 보호시청도로 제작시청교행 서울특별시광진구청주차 국민건강보험공단포항북부지사장수
2009-115	경북70나19810 김미정	카렌스LPG 75072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505번지 7호 29/6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320 대원종합폐차장내에	LG카드(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9번지단지사천시청교행 원주시청교행 국민신용카드(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167번지2003카단2107 삼성카드(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87번지2003카단3411 포항북부경찰서경교 포항시북구청건교 세무 국민건강보험공단포항북부지사장수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마산중부경찰서교행 국민건강보험공단마산지사지정 통영시청교행
2009-116	경기42누9019 이기진	쏘나타투1.8 74022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전읍 문덕리 299번지13호 106호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320 대원종합폐차장내에	안산시청도세 안산경찰서교행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지관 안산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시남구청건교 안산시단원구청세무.사할 삼성캐피탈(주)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50번지단지



포항시 공고 제 2009 - 797호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폐차)공고

우리시 관내 노상 등에 무단 방치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폐차코자 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기간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은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 드립니다.

포항시장 박



2009. 07. 10.

- 1. 공고기간 : 2009. 07. 10. ~ 2009. 08. 10. (1개월간)
- 2. 권리행사기간 : 2009. 07. 10. ~ 2009. 08. 10. (1개월간)
- 3. 보관장소 : 포항종합폐차장 【(054)-285-4040】
- 4. 폐차 예정일 : 공고기간 종료 이후
- 5. 문의처 : 포항시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담당자 ☎(054)270-3643
- 6. 공시송달은 공고로 같음합니다.
- 7. 강제처리대상차량 : 붙임 내역참조

## 무단방치 이륜차 내역 및 차량사진



차량번호:번호판없음

방 치 위 치: 북구 두호동 관내(학산지구대에서수거)

보관장소:포항종합폐차장: 전화 285-4040

소유자 : 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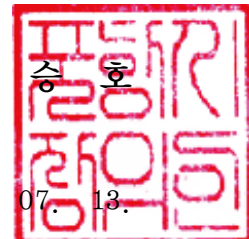
- 방치차량 : 4대(검정색 2, 주황색 1, 빨간색 1)
- 상 태 : 4대 모두 번호판 없음. 형태는 양호
- 방치장소 : 두호동 관내에 있는 무단방치차량 수거 보관중
- 방치기간: 2009. 3월경 부터

포항시 공고 제 2009 - 801호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폐차)공고**

우리시 관내 노상 등에 무단 방치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폐차코자 하오니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기간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은 강제 폐차함은 물론 차량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같은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 (150만원이하의 범칙금)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포항시장 박



2009. 07. 13.

- 1. 공고기간 : 2009. 07. 13. ~ 2009. 07. 20. (8일간)
- 2. 폐차장소 : 신진폐차장, 포항종합폐차장, 동해지구종합폐차장,  
                  홍해종합폐차장, 태평양종합폐차장(주), 대원종합폐차장
- 3. 폐차예정일 : 공고기간 종료 이후
- 4. 문의처 : 포항시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담당자 ☎(054)270-3643
- 5.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 6. 강제처리대상차량 : 붙임 내역참조

강제처리(폐차)계획 내역

◆ 총건수 : 15 ◆ 공고기간 : 2009-07-13에서 2009-07-20까지

관리번호	자동차번호 성명	차명 주민번호	주소	방지장소		이해관계
				방치장소	보관장소	
2009-117	경북5구3455 김성식	이스타나-숫9살 를 430621-*****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87번지 19/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 장리 320 대원종합폐차 장내에	대구광역시수성구청지교 농협중앙회 서울특별시 시 중구 충정로1가 75번지사거리83286 대 구광역시북구청지교 대구광역시중구청지교 대 구광역시청주차 경진경찰서교통 경산시청환경, 세무, 교행 국민건강보험공단경산지사장수	
2009-118	부산30대9295 이종혁	쏘나타1111.8 751226-*****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513번지14호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 장리 320 대원종합폐차 장내에	삼삼캐피탈(주)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50번지단지 부산광역시시하구청세무, 교통, 환 위 삼성캐피탈(주)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50번지2002카36124 부산광역시수영구청교통 부산광역시시서구청교통 부산광역시남구청교통 부산광역시중구청교통 경주경찰서교통 부산광 역시부신진구청교통 부산광역시연제구청교통 영양경찰서안교 안동시청교행	
2009-119	전북38기6729 윤준화	쏘나타투2.0 55121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동동 67 번지5호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 장리 320 대원종합폐차 장내에	(주)삼화트러스트 경북 상주시 서문동 77-2 2단지 무주군청재무, 건교 무주경찰서교통 국 민건강보험공단무주지사지정 시흥시청지정 성 남남부경찰서경교 성남중원경찰서교통 포항시 북구청건교 포항남부경찰서경교	
2009-120	경기139디3619 강세호	프리스1.8AT 81011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634 번지7호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 장리 320 대원종합폐차 장내에	서울특별시마포구청교지 서울특별시금천구청 교지 광명경찰서교통 수원중부경찰서교통 수원 시장안구청사신, 교통 서울특별시서초구청주차 화성시청세정 화성경찰서교통 화성시차량등록 사업소차등 포항시북구청건교	

2009-121	대구28대4002 박상신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407번지 1/6	대구광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320 대원종합폐차장내에	대구광역시청물류 대구광역시달서구청건고, 환경,세무,징수 대구광역시북구청지교 대구달서경찰서교통 국민건강보험공단대구달서지정수부신광역시북구청교행 포항시남구청건고
2009-122	경북81기3165 이호중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978번지91호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320 대원종합폐차장내에	한국보증보험(주)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22-1098카터978 경주시창용랑, 교행,환경 포항시청교행
2009-123	경기184다2709 윤덕희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459번지 1호 1/4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320 대원종합폐차장내에	서울특별시노원구청화산,세이 서울특별시중랑구청교행 국민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징수 의정부시청세무,환경,교행 부산광역시정교관 대전광역시정교청 포항시남구청건고 의정부경찰서 교통 의정부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남부경찰서경교
2009-124	87어7774 서향숙	대구광역시 북구 오치동 1005번지 4/1 오치주공아파트 201동 510호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320 대원종합폐차장내에	현대캐피탈(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단지 국민건강보험공단광주북부지사지정 광주광역시북구청교통,환경,세무 광주북부경찰서교통 광주광역시광산구청세이
2009-125	서울44노-5466 이세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21번지 298호2층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320 대원종합폐차장내에	대우캐피탈(주)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292-3단지 서울특별시광진구청세이, 교행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세무 서울동부경찰서교통 서울관진경찰서경교
2009-126	경북27나4910 정동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170번지 27호 12/2 영동그린타운 나동 202호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64-8 번지상 도로상에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시남구청사회국민건강보험공단포항남부지사지정 포항시청환우

2009-127	95루6063 손상호	와이드봉고리캠 69090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9번지 잠실엘스 140동 1903호	포항시 북구 정성동 뒷 데낙천대 뒤편 도로상 에	경주시정화경, 교행 국민건강보험공단포항북부 지사직관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장수 포항시남 구청건교 포항시북구청건교
2009-128	대구3가7034 정철규	그랜저 510208-*****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67번 지21호3층302호	포항시 북구 양덕동 김 길산낙지 뒷편 도로상 에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수, 건교, 세무 대구광역 시중구청지교, 교행 대구광역시남구청지교 대구 광역시지량등록사업소차등 대구광역시경찰서교통 대구광역시수성구청지교 대구광역시청주차 대 구성서경찰서건교 포항시남구청건교
2009-132	경북41나1443 양철암	프리스 1.8AT 44060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83 번지 7호 17/6 인티피아 403호	포항시 남구 송도동 486-15 축항로316번지 앞 도로상에	경산시청세무, 교행 경산경찰서교통 포항시남 구청건교 포항북부경찰서건교 포항시북구청세 무 포항시정환위 포항시지량등록사업소차등 부 산광역시동래구청교통 경주시청성건
2009-138	05내1030 민진욱	아토스 550428-*****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용정리 22 번지 5호 8/2 성원맨션 가동 202 호	포항시 남구 정림동 3- 249 영남정비종합내에	현대캐피탈(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동 15-21단지 경주시청교행 현대캐피탈(주) 서 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2007캐단163 창원시청남세 창원시지량등록사업소차등 부산 광역시청교관 포항시남구청건교 창원서부경찰 서건교 부산광역시중구청교행
2009-139	03어3744 이명희	투스카니 (TUSCANI) 84081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정성동 866 번지 176호 14/6	포항시 남구 정림동 3- 249 영남종합정비내에	구미경찰서교통 구미시청세무 국민건강보험공 단구미지사자징 포항시남구청세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교행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 시북구청건교, 세무 포항남부경찰서건교 대구광 역시달서구청교통 포항시정환위 대구캐피탈 (주)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292-3단지